

3.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정비)
-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관리종목 지정 조치 등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상장 관련 실무 절차 정비)
- 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자기주식 공시 관련 사항 정비)
-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
- 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의 기본예탁금 요건 신설)
-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의 최대주주 관련 규정 적용기준 마련)
-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중복상장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명확화)
- 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기술성장기업 관련 공시의무 신설)
- 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시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 포함)
- 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분산의무 강화)
-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지정자문인의 이전 상장 주선인 우선협상권 근거 마련)
-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외환시장 거래시간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문 정비)
- 파. 손해배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1)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가) 개정 이유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5.16.)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거래소가 추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PBR기업을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정비(제18조, 제19조의2)

-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의결권 수를 고려한 최다의결권자 정의 신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주식의 의결권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최다의결권자라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특례

- 신규상장 및 합병상장과 관련하여 최다의결권자 및 그 특수관계인(최다의결권자등), 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 최다의결권자등이 소유한 주식을 취득한 자를 의무보유 대상으로 추가
- 단, 복수의결권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은 법률상 보통주식 전환 기한 또는 해당 주주의 보통주식 의무보유기간 까지로 설정
-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최다의결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신주를 취득한 자에게 6개월간 의무보유 근거 마련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규모가 큰 경우 비상장법인이 충족해야하는 최대주주 요건을 최다의결권자에도 적용

□ 저PBR기업 기업가치 제고 관련 제도 정비(제157조의2)

—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 근거 마련

- 추가순자산비율이 2반기 연속으로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을 저PBR기업으로 선정·공표하는 근거 마련

2)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가) 개정 이유

-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권상장법인의 의사사항 등을 신설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상장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등을 우회상장 유형으로 추가하기 위함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

나) 주요 내용

□ 종속회사등 상장시 주권상장법인 이사회의 의무 신설(제78조의2)

- 종속회사등 상장 추진시 주권상장법인 이사회는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주주 보호방안 등에 관하여 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총회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찬반의견을 결의하고 해당 찬반의견을 종속회사등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 한편, 주권상장법인 이사회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 위원장을 독립이사로 하고 2/3 이상을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에게 독립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격요건 요구

□ 중복상장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우회상장 제도 정비(제37조)

- 중복상장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비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우회상장 유형으로 추가
 - 예를 들어, 상장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와 상장 종속회사를 합병 등

□ 중복상장 규제 위반시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근거 마련(제157조의3)

- 중복상장 관련 주권상장법인의 의무 미이행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억원 이내에서 상장계약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관련 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 종속회사등 상장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사회의 의무 신설(제19조의2)
- 중복상장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상장 제도 정비(제33조 제3항)
- 중복상장 규제 위반시 상장계약위약금 부과근거 마련(제53조의2)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1)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가) 개정 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최근 관리종목 지정 조치 등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 효율화를 위해 실무 절차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상장제도 정비(제19조의2, 별표 2의2)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특례
 - 자진상장폐지 및 의무보유 예외사유 적용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등에 최다의결권자 또는 최다의결권자등을 포함하여 적용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질적심사기준 정비 등
 - 복수의결권 발행의 적정성 여부 및 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 마련 여부 등의 심사 근거 마련 및 그 밖의 내용·서식 정비
- 상장 관련 실무 절차 정비(제28조 제8항, 제126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별표 1, 별표 7)
 - 부실기업 퇴출기준 강화 관련 상장규정 개정(2026.7.1. 시행)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절차 등 정비
 - 시가총액 미달 사유 및 주가 미달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해제 시기 명확화
 - 시가총액 미달 사유 및 주가 미달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점을 45일 계속 요건을 달성하기 불가능해진 시점으로 명확화
 - 관리종목 해제 기준을 미충족한 상황에서 46일째 장종료후 시가총액 및 주가가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익일 부터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거래 정지
 -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무 절차 등 정비
 - 애프터마켓 개설에 따라 거래량 미달 사유의 원활한 조치를 위해 반기 마지막 거래일의 경우 장종료시(15:30) 까지의 거래량만 포함하여 산출
 - 애프터마켓 20시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애프터마켓 거래량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당일 내 관리종목 지정 조치가 어려운 문제 발생
 - 지주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영향이 크지 않은 자회사에 대한 서류 제출 간소화
- 저PBR기업 선정 비율 구체화(제127조의2)
 -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저PBR기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함
- 조문정비(제48조 제9항·제12항, 제50조 제1항, 부칙 제2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1년)과 관련하여 시행시기 기준 명확화
 - 공시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판단시 누계벌점 산정기준 명확화
 - 반기 자본잠식, 분기 매출액 미달 관련 실질심사 사유 판단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화

2)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가) 개정 이유

- 중복상장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상장 모회사 의무 위반시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중복상장 심사대상 명확화(제70조의3)

- 중복상장 심사대상을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속회사 및 계열회사 중 수직적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로 규정
 - 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

□ 중복상장 심사기준 구체화(별표 2의2 제3호 가목)

-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심사기준을 구체화
- 물적분할 자회사, 일반 자회사, 저비중 자회사를 구분하여 투자자 보호 심사기준(주주 보호 노력) 적용
 - (물적분할 자회사)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 동의를 의무화
 - (일반 자회사)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를 심사하되, 모회사 주주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
 - (저비중 자회사) 모회사가 주주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등 절차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 심사를 면제
 - 자산·매출·영업이익 비중이 모두 10% 미만인 자회사. 기업가치 등을 고려할 때 거래소가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가치 비중도 추가심사 가능

□ 중복상장 모회사 의무 위반에 따른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기준 및 매매거래정지 근거 등 마련(제126조, 제127조의3, 별표 12, 별지 제4호2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약금 부과금약 기준을 정하고 위반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부과금약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상장계약위약금 부과시 1일간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1)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가) 개정 이유

- 「상법」 (2026.3.6.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4.12.31.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공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반기 자본 전액잠식 관련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사유 발생시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삭제하고,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불성실공시 적용기준을 정비(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3))
 - 「상법」에서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이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자기주식 처분을 공시의무에서 제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시 관리 기준을 수량에서 금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시변경 기준도 정비
 - 신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미달하여 취득·처분 등 경우 제재
- 최근 반기말 자본 전액잠식시 공시의무 신설(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2))
 - 최근 반기말 기준 자본 전액잠식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2026.5.13. 상장규정 개정)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사유 발생시 공시

2)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가) 개정 이유

- 상장법인에 대해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종속회사등 상장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8))
 - 종속회사등 상장시 주주영향 평가 및 찬반의견 등을 결의한 경우 공시
 -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하여 공시

3) 관련 규정 개정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삭제(제6조 제2호 다목)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6조 제6호 마목)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관련 불성실공시 적용기준을 정비(제11조 제3호)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1) 개정 이유

- 「상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39조 제1항)
 - 「상법」 개정 및 이를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규장을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불가하므로, 관련 매도 호가가격범위 조항 삭제
 -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균등처분 또는 제한된 사유(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또는 경영상 목적 활용 등)에 의한 제3자처분만 가능(상법 제342조)
 - 정규장에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문방법 등 세부 규정을 삭제(증발공 규정 제 5-9조 제5항)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35조 제6항, 제41조, 제80조 제1항)
 -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처분이 불가하므로, 관련 정규장 · 시간외시장(대량매매)에서의 자기주식신탁매도 근거 규정을 삭제
 -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는 장내·장외 처분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계약종료·해지시 상장법인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4)

[장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개정사항]

구분		기존		개정
정규 시장	상장법인 직접 매도	가능	⇒	불가(제39조 제1항)
	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매도			불가(제41조, 제80조 제1항)
시간외 시장	상장법인 직접 매도	가능		제한적 가능(제39조 제4항 제3호)
	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매도			불가(제35조 제6항, 제41조, 제80조 제1항)

3) 관련 규정 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7/2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14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9조의3 제1항, 제52조 제9항, 제59조, 제107조)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10조 제1항·제5항)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12조, 제36조 제1항)
- 기타 조문 정비(제10조 제2항 · 제4항 · 제6항, 제36조 제1항 · 제3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정비(제10조)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정비(제7조의2, 제12조)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14조 제1항 · 제5항)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16조, 제54조 제1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정비(제19조)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정비(제8조, 제21조)

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7/30 개정 · 2026/7/3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2026.7.16.)의 일환으로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 상장지수증권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의 기본예탁금 요건 신설(제111조의3)

-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현금에 한함)으로 하고, 대용증권을 미인정
 - 거래경험 등에 따른 완화를 금지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을 두지 않음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1) 개정 이유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 근거 마련 및 특례상장기업 정보 제공 · 상장관리 강화 등 코스닥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최다의결권보유자 정의 신설 및 용어 정비 등(제2조)
 -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경우 의결권 수를 고려한 최다의결권자 정의를 신설
 - 보통주식 및 의무보유 정의 내용을 정비
-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의 최대주주 관련 규정 적용기준 마련(제3조의2)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에서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최대주주 관련 규정을 최다의결권자에도 적용
- 복수의결권주식의 의무보유 사항 및 기타 정비(제26조, 제31조, 제50조, 제77조)
 -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의무보유 근거 및 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최다의결권자가 지분 100분의 30 이상 보유시 코넥스 신속 이전기업 특례(경영안정성 심사 면제)를 적용
 - 법률상 보통주식 전환 기한 또는 해당 주주의 타 보통주식 의무보유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 근거 마련(제47조의2)
 - 추가순자산비율이 2반기 연속으로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을 저PBR기업으로 선정 · 공표하되,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함
- 특례상장기업 정보제공 · 상장관리 강화(제5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56조 제1항 제6호의2)
 - 특례상장기업의 매출액 미달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면제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조건부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척 개정을 위한 위임 근거 마련
 - 기술성장기업이 공시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한 사업목적 추가 · 변경을 공시한 경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1)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가) 개정 이유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2025.12.19.),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후속 조치로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신설(제8조의2, 제61조 제1항 제6호, 별표 6)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최대주주 관련 규정을 최다의결권자에게도 적용
 - 최다의결권자와 최대주주의 지위가 상호 변경된 경우를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 복수의결권 발행의 적정성 여부 및 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근거 마련
- 저PBR기업 선정 비율 구체화(제43조의2)
-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저PBR기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함
- 특례상장기업 정보제공 · 상장관리 강화(제4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4호의2)
- 특례상장기업(기술성장기업·이익미실현기업)의 매출액 미달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면제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조건부로 적용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1호에 따른 자율공시
 - 해당 조항의 개정된 부분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법인부터 적용
 - 기술성장기업 공시한 경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
- 시가총액 · 주가 미달 관리종목 적용방법 · 해체시기 정비(제51조, 별표 10)
- 시가총액 ·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해체시기를 45 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 주가 기준 이상이 된 거래일의 다음날로 규정
 -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적용시 종가가 없는 경우, 시가총액 미달 적용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종목의 당일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가격(코스닥시장 업무 규정 제2조 제16항)

- 시가총액·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화

□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확대(별표 7의 제6호·제7호·제8호)

-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산업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마련

□ 외국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정비(별표 12·13)

□ 상법 개정(2025.7.22. 일부개정, 시행일 2026.7.23.)에 따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 요건 강화를 외국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필수 기재사항에 반영

-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 → (개정) 이사 총수의 3분의 1

□ 기타 개정

- 반기·분기 재무사항 기준으로 판단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실질심사 사유의 판단 기준 명확화(제48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제10호)
- 거래량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변경(제54조 제1항)

2) 2026/7/31 개정·2026/8/3 시행

가) 개정 이유

- 중복상장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상장 모회사 의무 위반시 상장 계약위약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중복상장 심사대상 명확화(제20조의2)

- 중복상장 심사대상을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속회사 및 계열회사 중 수직적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로 규정
 - 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

□ 중복상장 심사기준 마련(별표 6 제3호의2)

- 중복상장의 경우 질적심사기준의 특례로서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심사기준을 마련

- 투자자 보호에 대한 심사기준(주주 보호 노력)을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일반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저비중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로 구별하여 규정
 -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화
 - 일반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는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를 심사하되, 모회사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
 - 저비중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는 모회사가 주주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등 절차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 심사를 면제
 - 저비중 자회사는 자산·매출·영업이익 비중이 모두 10% 미만인 자회사로 기업가치 등을 고려할 때 거래소가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가치 비중도 추가심사 가능
- 중복상장 관련 모회사의 의무 위반에 따른 상장계약 위약금 부과 기준 및 매매거래정지 근거 등 마련(제19조 제1항 제3호, 제58조의2, 별표 15, 별지 제28호의2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약금 부과금액 기준을 정하고 위반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부과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상장계약 위약금 부과시 1일간 거래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1)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가) 개정 이유

-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관리를 위해 기술성장기업이 특례기간내에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상법」 등 개정에 따라 공시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기술성장기업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6조 제1항 제1호 사목)
 - 기술성장기업이 특례기간(5년) 중 사업목적 추가 ·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결의 시 공시의무 부과
-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삭제하고,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관련 불성실공시 적용기준을 정비(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3))
 - 「상법」에서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이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자기주식 처분을 공시의무에서 제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시 관리 기준을 수량에서 금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시변경 기준도 정비
 - 신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미달하여 취득·처분 등 경우 제재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1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사유 발생시 공시

2)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가) 개정 이유

- ☐ 상장법인에 대해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종속회사등 상장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11))

- 종속회사등 상장시, 주주영향 평가 및 찬반의견 등을 결의한 경우 공시
-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하여 공시

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6/7/2 개정 · 2026/7/3 시행)

1) 개정 이유

- ☐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금융위 등) 후속 조치로서 공시위반과 관련된 실질심사 개시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기 위함
- 벌점요건 하향(15점 → 10점), 고의이면서 중대한 공시위반요건 신설

2) 주요 내용

- ☐ 해당 불성실공시가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제15조)
-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시위반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중인 상장법인은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2026/7/1 개정 · 2026/7/1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의 주식 분산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
 - ‘위기에 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

2) 주요 내용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분산의무 강화(제28조 제1항)
 - 상장폐지 사유 중 분산요건 미달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사의무 주식 비율을 상장 후 경과기관에 따라 세척에서 정하는 수량까지 점차 확대(최대 100분의 15)하고, 분산주주 수 요건을 신설
 - (기존) 상장 1년 이후부터 분산주식 비중 100분의 5 유지, 분산주주 수 요건 없음
 - (개정) 상장 연차별로 분산주식 비중 유지의무 강화, 분산주주 수 요건 신설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의 주식 분산의무 단계적 강화 및 지정자문인의 이전상장 주선인 우선협상권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위기에 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

2) 주요 내용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분산의무 강화(제24조의2 제1항, 제2항)
 - 상장폐지 사유 중 분산요건 미달과 관련하여 상장연차별로 분산요건을 점차 상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분산주주 수를 확보

구 분	현 행	변 경
분산의무 지분율	(1년 경과) 100분의 5	(1년 경과) 100분의 5 (2년 경과) 100분의 10 (3년 경과) 100분의 15
분산주주 수	-	(1년 경과) 50명

- 지정자문인의 이전상장 주선인 우선협상권 근거 마련(제3조 제2항)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시 지정자문인에게 이전상장 주선 관련 우선협상권을 부여
 - 다만, 지정자문인이 상장주선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7/6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24시간 체제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서울외환시장 거래시간 변경]

기존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개정 (2026.7.6.시행)	① 뉴욕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기간 -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② 그 외 기간 -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③ 1월 1일만 휴장(한국 공휴일은 개정) ④ 매년 첫 영업일은 9:00 개장 ⑤ 매년 마지막 영업일은 24:00 폐장

*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와 미달러화간 거래시간만 변경

2) 주요 내용

- 사용 환율 시점 명확화(제47조의7, 별표 1)
 -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 산출에 사용하는 미국달러현물환율 체결건수 산정시간을 당일 9시로 명시
 - 기초자산기준가격 산출에 사용하는 환율 표현을 환율 고시기관과 일치시켜 당일 15시 30분의 미국달러현물환율로 명시
 - 미국달러선물거래,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및 통화옵션거래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현물가격 기준 정비(제72조의3)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인수도결제금액 산출에 사용하는 미국달러현물가격의 기준을 당일 정규거래 개시 이후에 형성된 환율로 확대

파. 손해배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026/7/1 제정 · 시행)

1) 제정 이유

- 거래소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 범위와 절차를 심의하기 위한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심의 대상의 정의(제2조)

- 각 상장증권 및 상품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 거래소의 시장조치 또는 전산장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로 그 배상 심의 대상을 정의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회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은 위원장과 시장, 소비자보호, 법률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촉
- 위원회간사는 리스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함

□ 위원회의 운영(제4조 및 제5조)

- 위원회는 손해배상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 배상기준의 적정성, 대상자와 손해액 등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 안건은 회의 소집 3일 전까지 통지하고, 속행의 경우 1개월 이내 소집

□ 경비지급 근거 마련 및 의사록 작성(제7조 및 제8조)

- 위원의 경비지급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지급 지침' 준용
- 각 심의관련 의사록 작성 및 비공개가 원칙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